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6월 28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지방자율성 제고: 승인·협의 및 보고사항의 통보사항 전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에의 승인·협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국가가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승인·협의 및 보고 등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협의 및 보고를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협의 및 보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

관련하여 보고와 통보는 국가에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보고란 사무절차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인 반면, 통보는 수행결과만을 알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고가 통보보다 강력하게 자치권에 대하여 간섭한다고 볼 수 있음.¹⁾

승인과 협의 역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사전적 관리 및 기준·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승인·협의 및 보고 등을 통보 또는 의견 제출 요청 등으로 전환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사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보다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에 있어

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 승인·협의·보고 등에 관한 법령정비를 중심으로」, 법제처·한국비교공법협회, 2018, p.67.

자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의 법령상 제정기준 삭제 등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기능으로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정에 맞게 규범을 정립하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도 관행적으로 상세 규정을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을 근거로 그 위임사항을 직접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²⁾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적지 않음. 이러한 통일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대한 국가의

2) 하혜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간섭을 줄임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임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

나.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정리함(안 제3조 및 안 부칙 제2조)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공장의
개설기준,”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illegible]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부 칙

제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 -----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59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19조의 제목“(보고 및 출입·검사)”를“(통보·보고 및 출입·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를 “공영도시

농업농장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 없이 변경할”을 “통보하지 아니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를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보호법」의 개정)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94조제4항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말산업 육성법」의 개정)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로 한다.

제6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산림보호법」의 개정)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9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를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9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를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0조(「축산법」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2조의13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제59조제5항·제116조제2항·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조 중 「축산법」 제28조제3항·제42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u>통보</u> _____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_____ _____ <u>통보</u> -----.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 하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u>통보</u> -----.

여야 한다.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9조(<u>보고 및 출입·검사</u>)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통보</u> -----.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u>통보·보고 및 출입·검사</u>) ① ----- ----- ----- ----- <u>통보</u>-----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지사는 <u>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 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③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 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 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u> ④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 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u>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 ·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 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 출하여야 -----.</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 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 구할 수 있다.</u> ④ _____ _____ <u>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도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u>

사항은 <u>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u>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u>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⑥ <u>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_____. 통보하지 아니할 -----. ⑤ _____ _____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 ⑥ <u>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u>-----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27 –

	<u>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u>
--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고·검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 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게</u>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검사) ①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 하게</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u> _____ _____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u>시·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u> 한다. ④ (생략)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 -- <u>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u> ---. ④ (현행과 같음)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 ----- ----- ----- ----- ----- ----- ----- ----- ----- ----- ----- ----- ----- ----- ----- ----- <u>산림청장은 관</u> <u>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u> <u>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u> <u>행정기관의 장과</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

③ ~ ⑥ (생 략) 제11조(입장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정한다.	<u>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 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 등록 현황을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통보</u> _____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 립)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 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 립)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u>통보</u> _____ -----. ③·④ (현행과 같음)